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5. 14 선고 2020가단8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.

판 결 선 고 2021. 5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경상남도 산청군 D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2019. 9. 16.자 증여(양도)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9. 16. 증여(양도)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증여(양도)취소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차93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. 위 C은 경상남도 산청군 D에 있는 “E” 사업장(이하 ‘이 사건 사업장’이라 한다)을 운영하다가 2019. 9. 17.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부 인수인계(즉,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 내지 양도)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있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 내지 양도의 취소를 구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소외 C에 대하여 원고 주장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, 위 C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9. 9. 17. 폐업신고한 사실 및 현재 피고 명의로 위 사업장 주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,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C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내지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선주